

연구윤리 사례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차례 | CONTENTS

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사례집 발간 취지 | 05

1. 연구윤리란? | 06
 - 1) 연구윤리의 개념 | 06
 - 2) 연구윤리의 원칙 | 07
 - 3) 연구윤리의 범위 | 08
2.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11
3. 정부출연(연)에 연구윤리를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 | 12

I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유형의 개념 및 특성 | 15

1. 2011년도(2010년 실적)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의 개요 및 판단 기준 | 16
2. 2011년도(2010년 실적) 연구보고서 사례집 발간의 방향 및 연구윤리 위반유형의 특성 | 19
 - 1) 사례 탐구를 위한 대상 보고서 | 19
 - 2) 사례 탐구의 일반적 방향 | 19
 - 3) 연구윤리 위반 유형의 특성 | 20

II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따른 사례 및 시사점 | 23

1. 표절 의심사례 | 24
 - 1)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심사례 | 24
 - 2)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의심사례 | 35
2. 중복게재 의심사례 | 45
3. 부당한 저자표시 의심사례 | 55
4. 기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56

IV Q&A | 61

연구윤리 사례집

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사례집 발간 취지

1. 연구윤리란?
2.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3. 정부출연(연)에 연구윤리를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

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사례집 발간 취지

1 연구윤리란?

1) 연구윤리의 개념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 즉,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¹⁾ 즉, 연구윤리는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정직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서 위조(날조, 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일반적으로 FFP라고 함) 등 의도적인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연구자로서 충실성(research integrity)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로서의 충실성이란 연구윤리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용어로서 바람직한 연구 실행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 준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성은 연구 내용의 정직성(honesty)과 연구 수행 과정(절차)에서의 세심함과 정확성이 확보됨을 의미하는 완전함(wholeness) 혹은 온전함(intactness)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충실성은 연구윤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연구윤리가 곧 연구자의 충실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충실성은 물론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의 윤리성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²⁾

1) 이인재,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윤리," 한국윤리학회편, 『과학기술과 윤리』(서울:형설출판사, 2008), p. 256.

2) 연구윤리와 연구충실성(진실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7년, pp. 30-31 참조.

2) 연구윤리의 원칙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할 때 어떤 태도나 행동 룰(rule)을 따라야 하는가? 물론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단일한 최선의 방법이나 모든 과학적 탐구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책임 있는 연구라고 인정되는 행동들은 학문별 혹은 실험실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치나 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구윤리 전문가인 레스닉(D. B. Resnik)은 과학윤리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³⁾, 이는 바로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레스닉이 말하는 과학윤리의 원칙〉

과학윤리 원칙	내용
정직성 (Honesty)	과학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조작, 위조, 또는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조심성 (Carefulness)	과학자는 연구에 있어 오류를 피해야 한다. 특히 결과 부분의 제시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개방성 (Openness)	과학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 등을 공유해야 한다.
자유 (Freedom)	과학자는 어떤 문제나 가설에 대한 연구든 자유롭게 수행해야 한다.
공로 (Credit)	공로는 마땅히 그것이 주어져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육 (Education)	과학자는 예비 과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더 나은 과학을 수행할 방법을 확실히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대중에게까지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과학자는 사회에 대해서 해(harms)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법성 (Legality)	연구의 과정에서 과학자는 자신의 직업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기회 (Opportunity)	어떤 과학자라도 과학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과학적 직업에서 승진할 기회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편,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서울:두양사, 2006), p.p. 18-19.

상호존중 (Mutual Respect)	과학자는 동료들을 존중해야 한다.
효율성 (Efficiency)	과학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논문 작성 시 연구를 일부러 여러 편의 논문으로 쪼개어 출간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단지 미세한 수정을 통해 여러 편의 상이한 논문들에 이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Subjects)	과학자는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때 인권 또는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물을 실험으로 사용할 때도 조심스럽게 적절한 존중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연구윤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에서 발간한 『연구윤리의 소개』에는 모든 연구자들을 구속하는,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공통 가치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⁴⁾ 첫째, 정직성이다. 이는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정확성이다. 이는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오차를 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셋째, 효율성이다. 이는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객관성이다. 이는 사실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밝히고, 부당한 편견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연구윤리의 범위

연구윤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학문 분야마다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⁵⁾ ① 과학연구 과정에서 정직하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충실한 연구를 수행했는가, 즉 의도적인 속임수나 부주의, 자기기만(self deception) 등으로 과학연구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았는가? ② 연구결과의 출판 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시를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등 연구의 공로 배분이 합당했는가? ③ 실험실(연구과정)에서의 권위나 차별은 없었는가(이를테면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 혹은 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원의 관계가 민주적인가, 혹은 여성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았는가? 등) ④ 과학자(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다했는가(즉, 연구의 내용이 공공성에 반하지 않았는가,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가 공공성을 담보했는가? 등) ⑤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4)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소개』, 교육인적자원부, 2006, p. 7.

5) 이인재, “연구윤리 정립방안: 표절이란 무엇인가?” 한국윤리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과학기술사회에서 연구윤리의 과제』, 2007년 8월, pp. 191-192;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2006. 8)”, pp. 29-30; 송석수, 김석관,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 Brief』, 제9호, 2006. 1.; 김명진, “한국의 과학윤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과학사상』, 제43호, 200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 21-25.; A. E. Shamoo and D. B. Resnik,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여기서 ①, ②, ③은 주로 과학계 내부의 윤리적 쟁점에 해당되며, 모든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연구윤리라고 할 수 있다. ④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과학자 혹은 과학계가 책임성 있는 자세로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쟁점에 해당된다. ⑤는 동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 의학, 심리학 등의 특정한 과학 분야에 적용되는 문제에 해당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1) 연구 과정의 진실성과 객관성 유지

연구자에게도 사회 통념적으로 적용되는 존중, 정의, 정직함, 책임성 등과 같은 윤리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경쟁이 심한 현대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연구비 확보, 승진, 임용, 업적 평가 등에서 손쉽게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부정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과정에서 진실성 및 객관성 유지와 관련하여 데이터 혹은 자료를 위조(날조), 변조, 표절한 연구부정행위 혹은 기만행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세계에서 최초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한 미국은 연구자 본인의 연구 활동에서의 진실성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오도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있는 연구행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진실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책임성과의 연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위조(날조), 변조, 표절만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⁷⁾ 그러나 유럽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적발, 처벌을 넘어서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연구풍토의 조성을 이상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연구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저자표시나 타인과의 공동연구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는 등 미국에 비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데이터의 날조 및 변조, 지원서, 연구자금 신청 및 논문 발표 상 허위정보 기재, 지적 소유권 침해(허가없이 논문을 표절하거나 저자의 명의를 바꾸어 발표하는 행위, 아이디어 도용,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없이 출판하는 경우), 타인의 연구 방해, 실험과정, 결과물에 대한 상해 또는 조작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FFP 이외에 연구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한 일탈 행위, 사람 및 척추 동물 등에 대한 위협 방지 규정 위반, 다른 사람들과 연구부정행위를 조장, 공모, 은폐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⁸⁾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형에 가깝게 연구부정행위를 정의내리고 있다. 즉,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를 보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6) 이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송석수, 김석관,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 Brief』, 제9호, 2006. 1.; 김명진, “한국의 과학윤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과학사상』, 제43호, 2002, pp. 252-271.

7) 과학기술부, 앞의 책, p. 32.

8) 위의 책, pp. 32-34.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정의내리고 있다.⁹⁾ 즉 이 지침에서는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외에도 연구진실성의 확립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들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출판윤리

논문의 출판은 연구자로서 인정받는데 필수적인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 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저자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시(authorship)를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를 정함으로써 공로(credit)를 합당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과 같은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에 대해 정당하게 공로를 인정해야 하며,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람을 논문 저자로 올리는 이른바 “명예저자(honorary author)”의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의 논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발표해서는 안 되며(논문 쪼개기 salami publication, 데이터 증보 등), 동료심사(peer review)를 거치지 않는 등 확실하지 않은 연구 성과를 일반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 대중적 명성이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3) 실험실에서의 권위와 차별의 문제

오늘날 대부분 과학연구가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연구소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험실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원의 부당한 관계, 성희롱을 비롯한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차별, 연구원의 채용 및 대우에서 부당함, 연구비 및 실험 재료 등과 같은 자원의 부당한 배분, 실험과정에서의 각종 위험물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책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연구부정행위에

9)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07년 2월, 2006년 당시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이 2011년 6월 2일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안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대한 조항이 따로 추가되었다. 즉, 연구논문 등을 작성할 때에는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는 조치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4) 특정한 대상이나 방법을 포함하는 연구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이나 인간과 같은 생명체도 과학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어떤 연구와 실험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인지, 피실험자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졌는지, 인간의 존엄성 및 피실험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해치지 않았는지, 즉 실험동물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충분히 기울여졌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정신 장애인, 수형자 등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힘든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할 때 종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최근에는 인간유전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권 문제, 인간유전자 특허와 허용 여부,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우생학적 쟁점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¹⁰⁾

2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가 가지는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현대에 와서 대규모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또 과학기술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즉, 연구자의 연구 과정이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은 단지 연구나 개발의 직접적이고도 단기적인 결과에 국한하지 않고 그 사회적 영향에까지 미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구자에게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손화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¹¹⁾ 첫째, 연구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구행위와 연구 결과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일정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10) 송석수, 김석관,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 Brief』, 제9호(2006. 1. 12).

11) 손화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서울: 한국연구재단, 2011), pp. 234-238.

인정해야 한다. 둘째, 대체로 연구 결과들은 오늘날 대중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가질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셋째, 예측하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측하기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실시할 때는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전문 연구자의 전공 지식 및 연구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배타성에는 책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에 상응하는 힘과 책임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다섯째, 오늘날 수많은 연구들이 국가나 기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은 전문직 윤리와도 겹치는 부분으로서,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가 공공성을 담보했는가, 연구비를 적절한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이나 결과의 활용에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가능성을 숨겨야 하며, 사회가 활용하려는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즉,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나 사회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책임성있게 발언하고 독립적인 조언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전문가적 증인(expert witness)”으로서의 역할이다.¹²⁾ 그것은 “어떤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어떤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알려진 사실의 경우 그것에 따르는 불확실성은 무엇이고,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3 정부출연(연)에 연구윤리를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

어느 연구분야를 막론하고 연구자들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부정(research misconduct)을 의도적으로 했든, 알고 있는 연구 관행이 잘못된 줄 모르고 했든, 또 그 피해가 심각하든 그렇지 않든 그 부정적 결과는 고스란히 연구자 자신과 그가 속한 학문 공동체나 연구기관, 더 나아가 국가·사회 공동체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 연구자의 연구부정

12) M. J. Frazer and A. Kornhauser, eds., Social Responsibility in Science Education, (New York: Pergamon, 1986).; 송진웅역, 『과학 교육에서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서울:명경, 1994), pp. 58-59.

행위가 개인 및 연구기관에게 그리고 국가·사회에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은 2005년 말에 발생한 황우석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의 연구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실한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연구자들 가운데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없는 일쯤으로 생각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연구윤리가 마치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제약하는 일종의 구속물로 여겨 연구윤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윤리는 연구자 개인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연구 방향인지를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울 때, 명확하게 비랍직한 방향을 안내해 주고, 연구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예의 유혹을 떨쳐 버리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진실하고, 당당하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연구윤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연구자가 많을수록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문화를 확립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비랍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실천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국가 경쟁력(국가 브랜드)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구자가 속한 학문 공동체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연구진실성 검증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그러한 행위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인지를 잘 몰랐다고 소명하곤 한다. 또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는 통상 있어 왔던 관행이었는데 갑자기 높은 연구윤리의 기준을 내세워 단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황우석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정부출연(연) 연구자들이 표절 금지 등 연구윤리가 무엇인지를 몰라 표절 및 중복게재를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정부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해 알고 실천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일이다. 통상 연구자들은 관행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비판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 관행이 연구윤리의 기준에서 보면 시정해야 할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출연(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Think Tank로서 부가 가치가 높은 국가 정책 대안을 창출해 내는 데 있다. 훌륭한 국가 정책 대안은 바로 연구자들의 정직하고 창의적이며 적실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제시 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제출한 제 연구보고서의 평가도 얼마나 진실성과 독창성을 지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부출연(연) 연구자들 중에는 연구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가치는 독창성이라고 간주하여 연구 수행 과정이나 결과 발표에서 꼭 지켜야 할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등의 연구윤리를 등한시 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의 조작이나 표절 등과 같은 연

구부정행위가 독창적이고 최초의 연구 성과로 알려진 것들의 가치를 순식간에 허물어뜨린다는 점을 잘 목도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의 경우,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언뜻 보기에 진실성과 정직성을 증시하는 표절 금지 등 연구윤리가 정책 입안에 대한 지원 기능을 증시하는 일종의 목적 지향적인 정부출연(연) 연구결과물에 적용되기 곤란하다는 고정관념이 있기도 하지만, 정부출연(연) 연구 결과물에도 연구윤리가 적용됨으로써 소통의 활성화로 인해 연구와 적용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옴으로써 정부출연(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연)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¹³⁾ 최근 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국가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책 연구 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작성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은 교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의 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이나 결과 산출에서의 정직성, 객관성, 책임성을 등한시 한 채, 단순히 남보다 먼저 연구 성과를 산출했다고 해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할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고 먼저 연구를 수행한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지킬 것을 제대로 지켜 얻는 결과가 진정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요청되는 연구윤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의 제고는 물론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지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유형의 개념 및 특성

1. 2011년도(2010년 실적)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의 개요 및 판단 기준
2. 2011년도(2010년 실적) 연구보고서 사례집 발간의 방향 및 연구윤리 위반유형의 특성
 - 1) 사례 탐구를 위한 대상 보고서
 - 2) 사례 탐구의 일반적 방향
 - 3) 연구윤리 위반 유형의 특성

13) 남형두, "국책연구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윤리제도 정착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2011, p. 6.

I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유형의 개념 및 특성

1 2011년도(2010년 실적)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의 개요 및 판단 기준

1) 평가 목적 및 필요성

-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실사점검을 통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연구윤리 위반 유형들을 파악·유형화하여 연구윤리 위반 사례 유형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 작성 시 연구윤리를 올바르게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정책방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 방향

-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윤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유형 중 주로 표절과 중복게재 그리고 부적절한 논문 저자표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대한 실사평가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기관 정책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자 함.

※ 2011년도에는 연구기관별 연구보고서 1편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함

3) 시행 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관」 제47조(연구기관의 평가)

-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평가 내용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평가대상 기관 : 25개 기관

- 연구기관 : 23개 소관 연구기관
- 부설기관 : 2개 부설기관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 한국교육개발원	17. 한국조세연구원
2. 국토연구원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1.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산업연구원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한국행정연구원
5. 에너지경제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 통일연구원	15-1. 육아정책연구소	
8. 한국개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1.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기본연구과제가 없으므로 평가에서 제외

5) 평가대상 과제

- 평가대상과제 : 2010년도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중에서 연구기관별 1편
- 대상과제선정 : 2010년도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가대상과제로 선정

6) 표절 및 중복게재 판단의 기준

구분	내용
표절/ 중복게재	<p>-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중복게재는 저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표절 판단 기준></p> <p>① 타인(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및 분석 체계, 표현(고유한 용어, 어구나 문장, 데이터, 그림, 사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 - 공식 출판된 것이든 공식 출판되지 않은 것이든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p> <p>② 외국 문헌을 인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내의 다른 저자에 의해 이미 1차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원전을 본 것처럼 한 경우(2차문헌 표절) - 외국 문헌을 그대로 옮기거나 paraphrasing 또는 요약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③ 출처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하면서도 그 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부분에는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중복게재의 판단 기준></p> <p>-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내용(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상당 부분 원문 그대로 자신의 후속 연구 보고서에 옮기는 경우, 비록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재해석되어 활용되지 않고 단순 지면 채우기식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움(연구로서의 가치)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p> </div>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p>-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p>
기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p>- 본문에 출처표시를 했지만 직접 인용되어 있음에도 정확한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고, 저자명과 저작물의 출판 연도만 표기하는 경우</p> <p>- 본문에서 언급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p> <p>- 중요한 피인용 논문의 참고문헌 미기재는 편집상의 실수로 볼 수 있지만 의도적인 행위라고 오인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p>

2 2011년도(2010년 실적)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사례집 발간의 방향 및 연구윤리 위반유형의 특성

1) 사례 탐구를 위한 대상 보고서 : 2010-2011년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 풍부한 사례 제공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소관 연구기관 밖의 논문이나 보고서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을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 평가대상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생략함.

2) 사례 탐구의 일반적 방향

(1) 소관 연구기관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파악한 후, 유형화한다.

- 연구윤리 위반 유형: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 여러 유형 중에서 표절과 중복게재의 유형에 중점을 둠
- 연구윤리 위반 유형 분류의 기준: 2011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활용
 - 소관 연구기관에 기 제시된 연구윤리 지침에 제시된 연구윤리 위반 유형을 따름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함

(2) 각 유형별 사례의 특성과 올바른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각 유형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를 분석함
 - 표절 및 중복게재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석(설명)
- 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
 - 유형별 사례 분석을 활용하여 '소관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사례집 작성'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 및 주의 환기, 위반 사례 등)

3) 연구윤리 위반 유형의 특성

(1) 표절

(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형 1:

-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
 - 실험연구의 경우, 타인의 방법론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자의 독특한 사고나 논리 전개와 틀을 그대로 도입하여 기계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끼워 맞춘 것
 -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표현은 같지 않지만, 서술의 체계와 패러다임이 닮은 경우

유형 2:

- 일반적 지식¹⁴⁾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¹⁵⁾
 - 교과서나 교재 등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면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유형 3:

-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paraphrasing)¹⁶⁾ 또는 요약(summarizing)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형 4:

-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형 5:

-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 한 사람의 여러 저작물이나 여러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단어의 침식, 동의어 대체 등 발체 및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만, 발체·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14)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은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일반적 지식이란 쉽게 말하면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해당 전공)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교과서에 실리는 수준)을 말한다. 일반적 지식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즉 저자와 독자가 누구이고, 저자와 독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15)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나 그림 등을 자신의 논리 전개나 결과를 위해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므로써 자신이 직접 산출했다고 오해케 하는 경우

16) 저자가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해석)한 것을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장으로 말바꿔쓰기를 할 때는 원문의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언어나 리듬을 피해야 함.

(나)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유형 1:

-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유형 2: 2차 문헌 표절

-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은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표시 한 경우

유형 3:

- 인용한 것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본문에는 출처를 표시했지만 참고문헌에는 누락한 경우
 - 활용한 저작물을 참고문헌에는 표시했지만 본문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타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면서도 참조라고 표시하는 경우

유형 4:

-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¹⁷⁾: 활용한 타인의 동일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이나 타인의 다른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 모두에 대해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느 일부분에만 하는 경우

유형 5:

-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상당히 많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을 하면서도 해당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머리말 등에서 두리뭉실하게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

유형 6:

-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표시했지만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아이디어나 어구 및 문장을 가져온 경우
 - 즉,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이 것이 주가 되고 자신의 것이 종적인 것에 해당되는 경우

17) 유형4와 유형5로 제시한 “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와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의 용어는 남형두, 「국책연구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윤리제도 정 책방안 연구」, 2011년 pp. 95에서 가져온 것임.

(2) 중복게재

유형 1:

-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이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오해케 하는 경우)

유형 2:

- 출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시하지 않는 경우)

유형 3:

- 출처표시를 한 중복게재 (자기표절)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재해석, 재구성 등 비판적인 활용이나 새로움이 더해지는 활용이 아니라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3) 부당한 저자 표시

유형 1: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¹⁸⁾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유형 2:

-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 때, 저자 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
 -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든,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밝혀야 함.

(4) 기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유형 1:

- 연구 보고서 본문에서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출처의 누락 혹은 부정확한 표기

II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따른 사례 및 시사점

- 표절 의심사례
 -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심사례
 -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의심사례
- 중복게재 의심사례
- 부당한 저자표시 의심사례
- 기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8)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제공, 실험 및 조사를 통한 자료의 생성과 분석, 초안 작성, 연구결과의 승인 등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III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따른 사례 및 시사점

1 표절 의심사례

1)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심사례

사례 1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1
- 판단 근거: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활용한 분석 모형(방법론)에 대한 설명의 일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설명인 것처럼 하고 있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 보고서 2) 분석방법 부문 p. 16 ~p. 17

사회이동표 분석은 사회이동 연구에서 사회이동표에 대수선형 및 연관모형을 적용하여 다양한 위상학적(topological) 모형의 비교를 통해서 출신 계층과 도달 계층 간 관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병영 외, 2009). 사회이동표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모형은 본인의 초직과 본인의 이후 직업 간에 아무런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동의 기회는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는 독립모형(independence model) 혹은 완전이동모형(model of perfect mobility)이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og F_{ij} = a_0 + a_{1i} + a_{2j} (1)$$

이때 F_{ij} 는 기대도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가리키고, 는 각각 전체 평균효과, 행과 열의 직접효과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과 열의 효과는 사회구조적 변동에 의해 직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구조적 이동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독립모형은 현실 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래에서 도입되는 다양한 모형과의 비교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아래의 모형이 이 비현실적 독립모형에 비해서 현실에서 보이는 이동의 양상을 얼마나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독립모형에서 출발해서 대각선에 지위 유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일양적 계급 유지모형(uniform inheritance)(모형2) 및 유사독립 혹은 유사완전이동모형(quasi-independence 혹은 quasi-perfect mobility model)(모형3)이 도출된다.

이들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og F_{ij} = a_0 + a_{1i} + a_{2j} + I (2)$$

$$\log F_{ij} = a_0 + a_{1i} + a_{2j} + I_{i=j} (3)$$

여기에서 I 혹은 $I_{i=j}$ 는 각기 주 대각선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직업이 일치하는 세습이 다른 이동의 경우에 비해 얼마나 확률이 높은가를 나타낸다. 일양적 세습모형과 유사완전이동모형의 차이는 전자가 모든 계급적 지위에서 세습의 정도 혹은 확률이 동일하다고 보는 데 반해서 후자는 계급적 지위별로 세습의 정도 혹은 확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들 모형은 모두 주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의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동표 분석에서는 독립모형, 일양적 세습모형, 유사완전이동모형을 적용한다. 물론 사회이동표에 대해 다양한 대수선형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며, 출발 지위와 도달 지위 간의 관계에 대한 행렬 설계를 통해 세대내 이동을 재현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방식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모형의 해석 가능성이나 성별 비교를 위해 동일한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기초적인 보고가 목적이란 점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외(20××), “.....”, △△△△, p.159~p.162 5줄

1. 분석 모형

사회이동 연구에서 이동표에 대수선형 및 연관모형을 적용하는 연구 방법의 장점은 다양한 위상학적(topological) 모형의 비교를 통해서 출신계층과 도달계층 간 관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이동표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모형은 부모와 자녀의 계급적 지위 간에 아무런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동의 기회는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는 독립모형(independence model) 혹은 완전이동모형(model of perfect mobility)이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og F_{ij} = a_0 + a_{1i} + a_{2j} (1)$$

이 때는 기대도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가리키고, 는 각각 전체 평균효과, 행과 열의 직접효과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과 열의 효과는 사회구조적 변동에 의해 직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구조적 이동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독립모형은 현실 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래에서 도입되는 다양한 모형과의 비교의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아래의 모형이 이 비현실적 독립모형에 비해서 현실에서 보이는 이동의 양상을 얼마나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독립모형에서 출발해서 대각선에 세습의 정도를 나타내는 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일양적 세습(uniform inheritance)(모형2) 및 유사독립 혹은 유사완전이동모형(quasi-independence 혹은 quasi-perfect mobility model)(모형3)이 도출된다. 이들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og F_{ij} = a_0 + a_{1i} + a_{2j} + I \quad (2)$$

$$\log F_{ij} = a_0 + a_{1i} + a_{2j} + I_{i=j} \quad (3)$$

여기에서 I 혹은 $I_{i=j}$ 는 각기 주대각선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직업이 일치하는 세습이 다른 이동의 경우에 비해 얼마나 확률이 높은가를 나타낸다.

일양적 세습모형과 유사완전이동모형의 차이는 전자가 모든 계급적 지위에서 세습의 정도 혹은 확률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반해서 후자는 계급적 지위별로 세습의 정도 혹은 확률이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들 모형은 모두 주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의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6장의 이동표 분석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모형, 즉 이원이동표 분석에서는 독립모형, 일양적 세습모형, 유사완전이동모형을, 응답자 교육수준을 포함함 합원이동표 분석에서는 주효과 모형, 조건부 독립모형, 조건부 유사완전이동모형, 조건부 교육수준별 유사완전이동모형을 적용한다. 물론 사회이동표에 대해 다양한 대수선형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며, 계급 간 관계에 대한 행렬 설계를 통해 계급 간 이동을 재현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방식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모형의 해석 가능성이나 성별 비교를 위해 동일한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기초적인 보고가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6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모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해석 및 시사점

연구자는 다른 주제를 연구하더라도 동일한 분석 모형을 활용할 수도 있음. 그렇지만 분석 모형의 이론적 근거나 주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느냐는 연구자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 모형을 설명할 때 동일한 모형을 활용한 타인의 설명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왜냐하면 같은 분석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사용하는 목적이나 중점이 어떠한가에 따라 설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타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쓸 때는 타인의 독특한 설명 방식에 대한 존중의 표시와 자신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표시를 해야 함.

사례 2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2
- 판단 근거: 평가대상 보고서는 △△△△△의 “.....”의 개조식으로 된 여러 단락을 풀어서 거의 원문 그대로 차용하였으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평가 대상 보고서 (62쪽)

일본 u-health 서비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선진 기업들의 참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고령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u-health 서비스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u-health서비스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일본 후지경제사(「2008 건강관리 시스템 시장의 향후 전망」, 2008.11.5)는 일본의 IT 및 전자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헬스케어 관리 시장규모는 2007년 1,890억 엔에서 2015년에는 약 4.6배 성장한 8,249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 (30쪽)

나. 일본

- 일본의 u-Healthcare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선진 기업들의 참여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일본 정부는 1989년부터 Golden Plan을 실시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복지 10개년 계획을 세움으로써 재택 서비스 및 의료복지 시스템을 개발 및 수행해 왔으며, 현재 3차 건강증진사업으로 2000년부터 ‘일본 건강 21’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후지경제 사가 발표(2008.11.5)한 「2008 건강관리 시스템 시장의 향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IT 및 전자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헬스케어 관리 시장규모는 2007년 1,809억엔에서 2015년에는 약 4.6배 성장한 8,249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¹⁹⁾

해석 및 시사점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글(용어, 어구, 문장, 단락)을 자신의 저작물속에서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하여 활용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출처를 표시해야 함.

사례 3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2
- 판단 근거: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쓴 저작물의 문장이나 단락을 그대로 옮기거나 약간 변형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보고서 p. 30 ~ p. 32

1) 시장의 실패

시장은 자유롭고 합리적 선택을 바탕으로 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제이다. 그러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고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 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거래 당사자는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지칭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사회보험이나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사회복지배분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서비스 수요자를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과 지불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리하여 서비스 공급을 차별화할 경향이 있으며 예방적 서비스 공급, 시장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영리부문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체계를 이루는 것은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2)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개입할 근거로 볼 수 있는데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회복지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면 욕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평등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지역적 편차 감소와 예방적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전체 욕구와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통합적·효과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의 한계는 크게 네 가지로 지적된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경우 민간부문과는 달리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재적 공급 하에서는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에서 제공되어도 견제하기 어렵고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대해 둔감하여 서비스 개선에 미흡하고 책임감이 결여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집단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일 경우 경직성에 의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활동은 보편성이나 공정성 같은 사회적 가치에 구속되어 획일화되고 비효율적이기 쉬우며 기존의 법률안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독창성을 발휘하거나 실험적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부역할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공공부문 전적으로 의존하여 공급하기 보다는 정부가 민간부문에 서비스의 공급을 위탁하거나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3) 민간부문의 실패

사회복지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적 특성이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는 다르게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특수 대상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민간부문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민간부문이 가지는 불충분성, 개입주의, 분과주의, 비전문성 등으로 완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salamon, 1992 재인용, Tucker, 1980 재인용).

민간부문의 불충분성이란 자원부문을 통한 자원조달은 주로 자발적·자선적인 기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불안정하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부문의 개입주의란 자원조달방식이 자원조지에 재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요구나 가치가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의 선정 또는 조직활동 내용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자원 제공자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체계에 비추어 지역사회 욕구를 자의적으로 판정하므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제도적 권리의 성격보다는 자선의 개념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특징인 분과주의 즉 특정인구 집단이나 특정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집단의 욕구가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배제되어 서비스의 중복이나 단절이 발생하므로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민간부문은 제정문제로 인해 전문인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비전문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한계이론

(1) 시장공급의 한계

- 시장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합리적 선택을 바탕으로 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제로 여겨짐 그러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고,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 이어야 함 또한 시장의 거래 당사자들은 그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이를 가리켜 '시장의 실패'라고 함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개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서 사회복지 배분을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음

(2) 정부공급의 한계

- 시장의 실패가 정부 개입의 근기인데 정부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복지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경우 민간부문과는 달리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됨 정부의 독점적 공급체계 하에서는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에서 제공되어도 견제하기 어렵고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워 서비스 개선에 미흡하고 책임감이 결여되기 쉬움
 - 둘째, 공공서비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집단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셋째, 정부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일 경우 경직성에 의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넷째, 정부 활동은 보편성이나 공정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구속되어 획일화되고 비효율적이기 쉬우며, 기존의 법률 안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독창성을 발휘하거나 실험적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려움

(3) 민간부문의 한계

- 사회복지를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적 특성이 있음 김석산은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 공급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김석산, 1987).
 - 정부복지활동은 보완하는 기능

- 요보호대상자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공공문제로 변화시키는 기능
- 실험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 한편 Kramer는 민간부문의 공급기능의 고유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Kramer, 1981).
- 민간기관의 목적이 혁신적·실험적·시범적인 프로그램 활동에 있는 선구자적 기능
-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설립·개선·확장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개선자 혹은 대변자로서의 기능
- 시민참여 및 지도력 개발 그리고 사회적·종교적·문화적인 소수집단들의 특별한 이익을 보호하는 특정적이고 분과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

해석 및 시사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에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 바꾸어 활용하는 것은 표절임. 설령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한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 3가지 실패이론(정부, 시장, 민간부문)은 사회복지 관련 교과서에 수록된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면 출처를 표시해야 함. 특히, 민간부문의 실패를 기술할 때 원저자 ○○○이 김석산과 Kramer가 밝힌 내용을 요약 또는 말 바꿔 쓰기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본 저자가 글을 쓰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2차문헌 표절과도 관련됨.

사례 4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2
- 판단 근거: 평가대상 보고서에 있는 3개의 그림(데이터)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고유한 그림(데이터)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고 있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평가 대상 보고서 : 111쪽, 113쪽, 115쪽

그림 3-5. 공동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완전가격수렴
 그림 3-6. 공동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불완전가격수렴
 그림 3-7. 공동 오프셋을 통한 간접연계: 사용제한규정 시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 “.....” (20××) p. 1642.

Fig. 3. Price convergence when cap-and-trade systems are linked indirectly via credits. D_A and D_B are credit demand curves for systems A and B, and D_{A+B} is the aggregate demand curve. S_C is the supply curve for credits. Q_A and Q_B are reduction amounts (Btu emissions minus cap) in systems A and B. The price level in system A prior to system B's joining the credit market is P_A^0 . The autarky price in system B without any linkage is P_B^0 . The price levels in A and B after the entry of B into the credit market are P_A^1 and P_B^1 , respectively. In fig. (c), Q_B^{lim} is the import limit for credits in system B. The arrows indicate the direction of price changes resulting from indirect linking.

해석 및 시사점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 표, 사진, 그림, 데이터 등을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함.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나 그림 등을 자신의 논지 전개나 결과를 위해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을 저자 자신이 직접 산출했다고 독자를 속이는 경우에 해당됨.

사례 5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3
- 판단 근거: 아래의 < >로 표시된 부분은 ○○○ 외(2009)의 연구 내용의 일부분에서 요약하여 서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출처 표기가 누락되어 있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보고서 p.16 11~12줄

성요셉아파트는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하며, [그림2-1]의 평면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마을 골목길을 따라 선형으로 배치되었고, 경사를 따라 건물도 계단식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시장길을 따라 중림동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에 자리하여> 그 지형과 입지를 반영하였고 1층은 상가 2층이상은 주거로 구성되었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외(20××), △△△△ 중 p. 69.

성당으로 진입하는 입구 부분에 정원을 둔 상황에서 **마을 골목길을 따라 아파트를 자연스럽게 선형線形으로 배치하였다.** 일자형의 복도형 아파트로 기존 도로의 완만한 곡선을 따라 건물이 배치되었으며, **경사를 따라 건물도 계단식으로 점층적**으로 높아졌다. 비교적 기존의 지형을 고려하여 시공하였다. 서울역의 서편 청파로에서 이어지는 <대왕빌딩> 앞길에서 시장이 열린다. **시장길을 따라 중림동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에** 자리한 <성요셉아파트>의 저층부도 상가로 쓰이며, 아파트는 2층에서 시작한다. <성요셉아파트>는 도시의 가로, 주변의 기능들, 아파트의 고유한 주거 기능을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더욱 바람직한 조화로운 매개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이러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및 시사점

연구자는 타인이 쓴 원문의 의미가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문의 몇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을 순서를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음. 그러나 자신의 논문을 쓰는 목적이나 논지 전개의 필요에 따라 타인이 쓴 핵심 어휘나 문장 및 논리를 적절하게 말 바꿔 쓰기를 했다고 해도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자신의 문장으로 말 바꿔 쓰기(paraphrasing)를 할 때는 원문의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언어나 리듬을 피해야 함.

사례 6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4
- 판단 근거: 아래의 평가대상 보고서는 외국어로 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고 있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평가대상 보고서 54쪽.

상향식 연계들의 합은 다자간 협정에 대한 협상의 자연스러운 시작점이 되어 제도적 역량(capacity)을 강화하고 장기에는 포괄적인 하향식 협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양자간 연계협상의 경험들은 글로벌 협상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계들은 현상학적(status quo)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며 미래의 다자간 협정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20××, “.....” p. 14.

A second possibility is that a collection of bottom-up linkages might serve as a natural starting point in negotiations leading to a top-down agreement. An existing system of linkages may help to develop the experience and mutual trust necessary for global negotiations to succeed. Furthermore, as we discuss below, any future agreement is likely to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status quo system of existing linkages and institutional investments.

해석 및 시사점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후,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한 경우,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자신의 저작물 속에 타인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그대로 또는 말 바꿔 쓰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표절에 해당됨. 통상 연구자들은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바꿔 쓰면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옳지 않음.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표현이나 분석이 타인의 어떤 아이디어 및 표현으로부터 왔는지를 비교, 구분할 수 있게 해 줌.

2)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의심사례

사례 1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1
- 판단 근거: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각주는 달았지만 인용부호나 단락 구분(indentation)의 표기 없이 원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보고서 p. 15 밑에서 8째줄 ~ p. 17 상단

(1) 시설 안전 및 환경의 문제점

먼저, 낙후된 시설·환경 문제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편리성 등의 시설여건이 열악하며, 청소년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안전지원센터 등의 시스템이 없다. 시설의 임대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난다. 재정기반이 열악한 시설에서는 임대와 같은 편법·변칙 운영을 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안전사고 및 식품위생 등의 사고 발생 시 해결방안 취약하다. 또한, 휴양시설이나 위락시설에서의 수련활동 문제로 콘도, 리조트 등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수련활동을 유치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의 효과성, 안전성 등에 문제가 나타난다. 예컨대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위치해 있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의 미비로 수련활동 여건 미흡함은 물론이고 전문성이나 자격이 없는 지도자 배치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부실화를 야기함에 따라 영업중심의 불법 브로커들이 난립하여 비리요인이 상존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2)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미흡하며, 천편일률적인 모방 프로그램 중심의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낮고, 지속적인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와 청소년 욕구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개발과 적용이 미흡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일방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의 자발성 및 적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3) 운영 시스템의 문제

수익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청소년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수익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홍보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일부 수련시설의 경우 학교단체 수련활동 유치를 위해 홍보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3) 운영 시스템의 문제

수익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청소년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수익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홍보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일부 수련시설의 경우 학교단체 수련활동 유치를 위해 홍보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4) 기타 문제점

법적 요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생활관을 구비한 일부 청소년수련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 제7권 제2호, 77면 (다음 페이지)

3) 시설 안전 및 환경의 문제점

- ① 낙후된 시설·환경 문제 :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편리성 등의 시설여건이 열악하며, 청소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안전지원센터 등의 시스템이 없다.
- ② 시설 임대 운영으로 인한 문제 : 열악한 시설에서는 임대와 같은 편법·변칙 운영을 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안전사고 및 식품위생 등의 사고 발생 시 해결방안 취약하다.
- ③ 콘도, 리조트 등 휴양시설이나 위락시설에서의 수련활동 문제 : 콘도, 리조트 등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수련활동을 유치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의 효과성,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위치해 있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의 미비로 수련활동 여건 미흡함은 물론이고 전문성이나 자격이 없는 지도자 배치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부실화를 야기하며 영업 중심의 불법 브로커들의 난립으로 비리요인 상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4)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 ①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미흡 :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미흡하며, 천편일률적인 모방 프로그램 중심의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낮다.
- ②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미흡 : 지속적인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변화와 청소년 욕구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개발과 적용이 미흡하다.
- ③ 일방적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지도자의 일방적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 청소년의 자발성 및 적극성이 반영되지 못하며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5)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

- ① 수익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 퇴색 : 청소년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수익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홍보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일부 수련원의 경우 학교단체 수련활동 유치를 위해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정체성에 의문이 든다.
- ② 소외청소년들에 대한 수련비 무료제공으로 청소년시설의 경제적 부담 가중 : 학교단체 수련활동 시 소외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에서 수련비 무료제공 요청으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석 및 시사점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혔지만,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나 단락 구분을 하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됨.

- 통상 출처표시는 직접 인용의 경우 문장 단위로 하며, 3문장 이내로 할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로 표시하고, 3문장이 넘어설 때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indentation) 표시를 해주어야 함(자자 자신의 글과 인용된 원저자의 글을 구분하기 위해 한 줄을 띄우고 좌우를 들여 쓰거나 글자체나 크기를 달리함)
- 직접 인용은 원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글에서 원저자의 것과 자신의 것을 독자가 쉽게 구분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부호나 단락 구분으로 표시를 해야 함.

사례 2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1
- 판단 근거: 원문의 출처는 밝혔지만, 원문 p. 29 밑에서 8째 줄, “연구결과 실험집단~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은 해당 인용 논문인 ○○○(20××)의 초록의 일부를 그대로 옮겼으나 직접인용이기 때문에 인용표시(“ ”)를 해야 하나 하지 않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이병래(2003)는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적용 후 효과를 알아보았다. 프로그램 교육내용 선정을 위해 지역 내 대학생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교수들의 지문을 통해 최종확정하여 적용하였다. 프로그램내용으로는 ‘인간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 이해’, ‘아동중심교육방법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 ‘자녀발달에 적합한 교육방법’, ‘자녀의 성장·발달은 부모의 특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인식’, ‘부모와 아동 간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형성하기 위한 변화 추구’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실험집단 대학生の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 그리고 아동 교육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 대상 의심 부분 원본: 표절의심원문: ○○○(20××), “.....”, △△△△, 23(1), 133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e-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 발행기관	한국유아교육학회
- 발행정보	유아교육연구, 23 권, 1 호, Startpage 133, Endpage 152, Totalpage 20
- 저자	이병래 (Byung Nae Lee)
- 가격	4,000 원
- 발행년도	2003
- 주제키워드	예비부모, preparent, 예비부모교육, preparent education
- 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한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학기용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4년제 대학교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실제 수업활동에 적용한 후에 프로그램 평가를 위하여 자녀양육태도와 아동 교육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 대학生の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 그리고 아동 교육관이 긍정적 측면으로 변화되었고,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집단의 사후점수에 대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석 및 시사점

출처표시는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그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 접근이 쉽도록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저자의 것이고 원저자의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에 활용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한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글이 그대로 활용될 때, 즉 직접 인용될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 ”)를 하고, 출처표시를 해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글을 구분할 수 있고, 타인의 표현이 자신의 글에서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음.

사례 3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 2(차문헌 표절)
- 판단 근거: 원본에서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원본을 본 것처럼 인용하고 있음. 즉, Salamon의 1987년 저작물을 직접 보고 기술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Salamon의 저작물을 1차 인용한 정무성의 2차 문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음(2차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Salamon의 동반자 이론에 대한 내용을 본문 및 각주에 그대로 사용했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 평가 대상 보고서 p. 32의 1~7줄과 각주 9)

한다는 점이다(정기원 외, 2000). 이와 맥을 같이 하는 Salamon(1987)의 동반자이론에서도 비영리민간의 장점으로 정부기관의 단점을 보완하고 비영리기관의 단점을 정부기관의 장점으로 보완하는 관계가 이론적, 실천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⁹⁾ 즉 공공부문에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이고 선택의 폭이 넓은 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양 부문의 장점을 결합하는 제 3영역의 존재의 당위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9) 민간부문은 창의성, 시범성, 융통성, 비관료적 특성, 소수의견 반영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성숙된 산업사회의 민간문제를 다루는데 재정부족, 비전문성, 분파주의 같은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정부의 장점 즉 자원의안정적 공급, 민주적 과정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순위 설정, 권리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으로 분파주의 한계를 극복하며, 서비스에 대한 직접 통제기준을 제도화하여 민간조직의 비전문성을 개선함. 다른 한편 민간조직은 서비스를 개별화하여 인간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협력력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제고함.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외, “.....”, 20××, △△△△△△△

3) 동반자 이론(partnership theory)

- Salamon은 사회복지사업에서 국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반자 이론을 제시함. 이 이론은 비영리민간의 장점으로 정부기관의 단점을 보완하고, 비영리민간의 단점을 정부기관의 장점으로 보완하는 관계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음(Salamon, 1987). Salamon은 동반자 이론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제공의 규범적 근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민간부문은 창의성, 시범성, 융통성, 비관료적 특성, 소수의견 반영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산업사회의 인간문제를 다루는데 재정부족, 비전문성, 분파주의와 같은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민간부문의 약점은 정부의 강점을 통하여 잘 조화되고 수정될 수 있음. 적어도 정부는 자원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기부자들의 선호가 아닌 민주적 과정에 기초하여 서비스제공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로서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자선조직이 지닌 분파주의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질적 통제기준을 제도화함으로써 민간조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비전문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민간조직은 서비스를 개별화함으로써 인간 욕구에 맞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 따라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기도 함.

해석 및 시사점

2차문헌 표절이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를 리뷰할 때임. 즉, 타인이 1차 문헌을 통해 자신의 연구 목표나 논지에 부합하게 분석 및 요약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마치 자신이 1차문헌을 직접 활용하여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임. 아무리 공통된 문헌에 대한 리뷰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 주체가 다르다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타인의 독자적인 리뷰 노력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사례 4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 2(2차문헌 표절)
- 판단 근거: 외국 학자(Erikson & Goldthorpe)의 원본 인용표시를 하였지만, 원본이 아닌 2차 저작물에 기술된 내용을 축약하여 가져왔으면서 원본을 본 것처럼 인용표시를 한 것에 해당
- 예시:

표절 의심 부분 : 보고서 p.13, 14 ~ 25줄

세대내 이동의 상대적 이동 유형, 즉 이동 체제(mobility regime)의 항상성(constancy)이나 공통성(commonality)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교차표 분석은 이동의 구조적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사건사 분석과 같은 동태적 분석은 특정한 속성을 가진 개개인이 특정한 직업(계급)에 잔류하거나 그 직업(계급)으로 이동하는 이동 궤적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접근으로 한 사회 전체의 이동률과 이동 유형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개인의 이동 궤적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이동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개개인의 이동 궤적은 계급 구조와 같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 그러므로 동태적인 방법으로 이동 궤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차표 분석을 통해 한 사회전체의 이동률이나 이동 유형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Erikson & Goldthorpe, 1992 ; 282-283).

표절 의심 부분 대상 원문: ○○○(20××), “· · · · · .”, △△△△, p. 22, 18줄 ~ p.23, 14줄

그러나 이 글은 표준적인 교차표를 이용하여 세대내의 계급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차표 분석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교차표는 세대간 이동이나 세대내 이동의 상대적 이동유형, 즉 이동 체제(mobility regime)의 항상성(constancy)이나 공통성(commonality)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FJH 가설은 세대간 이동체제가 출생 코호트나 역사적 시기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뿐더러 국가별로도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Featherman, Jones & Hauser, 1975). 이러한 가설은 세대내 계급이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세대내 계급이동체제는 시기별·국가별 변이를 보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횡단면적 자료와 그에 근거한 교차표 분석은 비록 이와 같은 유사성과 공통성을 야기하는 구체적 원인이나 메커니즘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반면 동적인 분석은 경력이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밝힐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동체제의 항상성이나 공통성을 확인하거나 비교하기는 어렵다.

둘째, 교차표 분석은 이동의 구조적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사건사 분석과 같은 동태적 분석은 특정한 속성을 가진 개개인이 특정한 직업(계급)에 잔류하거나 그 직업(계급)으로 이동하는 이동궤적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접근으로 한 사회 전체의 이동률과 이동유형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개인의 이동궤적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이동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개개인의 이동궤적은 계급구조와 같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 그러므로 동태적인 방법으로 이동궤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차표 분석을 통해 한 사회 전체의 이동률이나 이동유형을 거시적으로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Erikson & Goldthorpe, 1992: 282-283).

이 글은 교차표 분석이 갖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먼저, 우리 사회의 세대내 계급이동의 유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이동을 규정했을 법한 몇 가지 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로 한다. 나아가 이 글은 한국의 세대내 계급이동이 타국의 그것과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우리 사회의 그것이 타국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면 그 이유를 논의하기도 할 것이다.

해석 및 시사점

본 글은 ○○○가 외국인 Erikson & Goldthorpe의 1차 문헌을 보고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한 것을 보고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으므로 이 2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재인용 표시) 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1차 문헌인 외국인의 원문을 저자가 직접 보고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한 것처럼 되어 있다. 2차 문헌 표절의 확인은 두 사람이 일부분이든 상당부분이든 1차 문헌을 말 바꿔 쓰거나 요약을 할 때 위의 사례처럼 같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음.

사례 5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3
- 판단 근거: 보고서의 본문에 인용된 문헌(자료)에 대한 출처표시가 되어 있지만, 참고문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실제로 보고서의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보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없음.
- 예사:

표절 의심 부분: 평가 대상 보고서 p. 4. (p. 22, p. 31 도 유사한 문제를 보임)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지식자본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지속적인 사회적, 개인적 성장을 주도하고 사회계층간 통합을 유도하는 핵심동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이혜정 외, 2009). 다양한 평생학습기관들 중에서 대학은 학습에 필요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평생학습기관 중 선호도가 높은 평생교육 시설이어서 학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운실, 2004; 정지선, 2008b; 최돈민, 2008).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지식수준과 글로벌 경쟁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휴먼뉴딜 차원에서 대학평생학습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제도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과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영국 정부는 평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고등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성인학습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Widening Participation(WP) 정책을 추진해 왔다.(HEFCE, 2009). 일본은 대학 입시에 '사회인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고, 성인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야간, 주말강좌 개설, '과목 등 이수생제도', 새틀라이트 캠퍼스, 단·장기 이수제도, 통신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모든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에 성인학습자를 위해 개방대학(open university), 계속교육센터(center of continuing education)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정규과정에 등록된 성인학습자에게는 수업료 지원 외에 '성인교육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채재은 외, 2009)

해석 및 시사점

보고서의 본문에서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저자명과 출판연도 등 약식으로 출처를 표시한 후, 참고문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지 사항(저작물의 제목, 출판지 및 출판사 등)을 밝히지 않았을 때, 독자는 보고서를 쓴 저자가 실제로 인용한 저작물을 보고 분석하여 제시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이미 정리한 것을 가져다가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됨. 따라서 본문에서 활용한 저작물에 대해서 약식으로 출처를 밝힌 경우, 반드시 참고문헌에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함.

사례 6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3
- 판단 근거: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한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어느 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예시:

표절 의심 부분: 평가 대상 보고서 각주 26)

4)가스산업 구조 관련 EU 사례

EU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력 및 가스 시장 자유화가 진행되어 왔다. 시장 자유화의 주목적은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필수적인 전력과 가스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있다.²⁶⁾

- 후략 -

26) 그밖에 경쟁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가스 시장의 편익으로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능 활성화, 에너지 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이 있다. (EC, 2007)

해석 및 시사점

각주 26이 있는 문장은 본 보고서의 저자의 얘기인지, (EC, 200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지가 불분명함. 또한 각주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EC, 2007)의 내용을 요약 또는 말 바꿔 쓰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대한 것인지 그 페이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독자로서 하여금 관련 정보나 자료를 찾고자 할 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특정 부분을 인용하거나 직접 인용할 때는 해당 페이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함.

2 중복게재 의심사례

사례 1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1
- 판단 근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고 있음. 본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저자 ○○○가 이전(2009년)에 연구한 보고서의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
- 예시:

중복 게재 의심 부분①: 평가 대상 보고서 p.10 5줄~p.11 19줄 및 표 <II-1>

<환경부(2009)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유기성폐기물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시설은 38개소로서 폐기물 처리용량은 일일 2만ton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들을 처리되는 폐기물에 따라 분류하면 하수슬러지 소화조가 17개소로 가장 많으며, 10개 시설은 병합처리 시설이다. 유기성폐기물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정화조 가열 연료 또는 발전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었다. <표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 생산된 전체 바이오가스 중 61.0%가 시설 내에서 단순 연료로 쓰였고, 발전 연료로 사용된 비율이 19.7%, 소각 또는 대기 중 배출 등 단순 처리된 양도 15.8%에 이르렀다. 연료로 자체 이용하는 경우 외에도 생산된 전력 모두를 시설 내에서 자체 소비하는 사례가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12개소 중 9개소에 달하는 등 생산된 에너지가 대부분 자체 소비되고 있었다. 그 결과, 총 38개 시설 중 에너지를 외부에 판매하는 시설은 전력 3개소, 가스 직접 판매 1개소 등 총 4개 시설뿐이어서 아직까지는 바이오가스 활용의 상업화 수준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표 II-1>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08)

(단위: Sm³)

유기성폐자원	가스생산량	가스 이용 현황			단순 처리
		발전	외부판매	자체 연료 이용	
음식물쓰레기	4,223,867	4,223,867	-	-	-
음폐수	3,845,701	-	-	2,905,701	940,000
가축분뇨	2,759,332	2,643,472	-	47,980	68,480
하수슬러지	22,335,935	556,419	-	19,271,737	2,507,819
병합	11,218,255	1,324,958	1,561,295	4,827,012	3,504,990
계	44,383,090	8,748,716 (19.7%)	1,561,295 (3.5%)	27,051,830 (61.0%)	7,021,289 (15.8%)

출처: 환경부(2009)의 원자료를 가공

〈표 11-9〉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한 나프타부생가스 판매 현황

부생가스 생산자	도시가스 사업자	공급처	판매(계약)량* (백만/m ³ 년)	부생가스 특성	배관망 연결 여부
SK에너지	경동 도시가스	삼성BP	12	열량 약 8천kcal/m ³ 90% 이상 메탄 수소 7~8%	완전 분리
SK에너지	경동 도시가스	동서 석유화학	8	"	완전 분리
삼성토탈	서해 도시가스	KCC	42	프로판 등으로 열량을 맞추어 공급(수소 7%)	차단

* SK에너지의 판매량은 시간당 판매량을 연간 330일 기준으로 환산

해석 및 시사점

연구는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더 심화 확대될 수 있음. 따라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여 이후의 저작물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저작물의 활용은 정당화될 수 있음. 다만 활용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든 상당 부분이든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그것이 처음 공개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함. 자신의 후속 저작물에 사용된 이전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믿게 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원 보고서에 있는 표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본문 및 각주가 누락될 경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중복게재로 판단할 수 있음.

사례 2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 2와 유형 3

● 판단 근거: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출처를 밝히고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이후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지 전개 등에 맞게 재해석해야 하지만, 단순히 그대로 가져다 copy and paste한 것으로 독창성이나 새로움의 요소가 미흡함. 또한, 자신의 저작물의 이곳저곳에서 가져다 이후의 저작물에 인용을 한 경우에는 각 인용부분마다 출처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지 않음.

● 예시:

중복게재 의심 부분: 평가 대상 보고서 p.25 2~p.26 9줄

〈국내외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연구 프로젝트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디지털 생태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WEF는 2006년 1월 디지털 생태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디지털 생태계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7년에는 시나리오 연구에 이어 시나리오의 적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WEF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모토로 삼고, 고객 참여를 바탕으로 산업 구성주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진화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번영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WEF가 추구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개념은 협력(Collaborative), 다양성(Diverse), 생산성(Productive), 진화(Evolutionary), 건강(Robust), 참여(Participatory)이다.

또 다른 해외 사례로는 EU의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DBE: Digital Business Ecosystem)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EU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DB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혁신적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DBE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컴포넌트, 어플리케이션의 자생적 진화와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형 환경을 개발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EU의 지역격차(regional divide), 대기업/중소기업 격차(size divide)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EU의 프로젝트는 산업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 도출 단계에 접어들었다. >

중복게재 의심 부분 대상 원문 : ○○○외(20××)『.....』△△△△, △△△△△ V.07-09 중 p.39 1~p.40 5줄

〈해외와 국내 모두 디지털 생태계 연구 추진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적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경제포럼(WEF)의 디지털 생태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WEF는 2006년 1월 디지털 생태계 프로젝트를 발족하고, 디지털 생태계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7년에는 시나리오 연구에 이어 시나리오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WEF이 추구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은 협력(collaborative), 다양성(diverse), 생산성(productive), 진화(evolutionary), 건강(robust), 참여(participatory)이다.

또 다른 해외 사례로는 EU의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DBE: Digital Business Ecosystem)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EU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Digital Business Ecosystem(DB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소기업(SME)을 통한 혁신적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SME의 더 많은 ICT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DBE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컴포넌트, 어플리케이션의 자생적 진화와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형 환경을 개발하는 디지털인프라(digital infra) 구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EU에서의 지역격차(regional divide), 대기업/중소기업 격차(size divide)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EU의 프로젝트는 산업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

해석 및 시사점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이전 연구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의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를 함. 이때 연구자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핵심 아이디어나 방법론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나 해석이나 결론이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점임. 학술적 저작물이든 정부출연(연)의 연구결과 보고서든 독자나 정부가 기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가 뭔가 새롭고 의미있는 성과를 제시할 것이라는 점임. 그런데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이전에 수행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연구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게 뭔가 새로움 또는 의미있는 가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연구자로서 성실한 연구수행을 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할 때 기금적 이전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닌 재서술 또는 재해석을 권장함.

사례 3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 3
- 판단 근거: 해당 내용은 ○○○의 2007년 연구보고서의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참고문헌 및 본문에 이를 밝혔으나, 이전 저작물을 재해석, 재구성 등 비판적인 활용이나 새로움이 더해지는 활용이 아니라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놓음.
- 예시:

중복게재 의심 부분: 보고서 p.23 7줄~p.24

손상영 외(2007)에서는 Moore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저자들과 논문들 간의 개념 비교 분석(conceptual analysis)을 통해 각자 주장하는 바와 차이점을 파악하여 정리한 바 있다.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자들과 그들의 저술로는 Moore(1996, 1998), lansiti & Levien(2004), lansiti(2005), Power & Jerjian(2001), Gossain & Kandiah(1998), Lewin & Regine(1999) 등이 있다. 이들을 정리하여 연구자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생태계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저자	주요 주장
Moore (1996,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작용하는 조직과 개인들에 의해 지원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supported by a foundation of interac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1996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leadership companies → keystone species - extended systems of mutually supportive organizations, 1998 - 1996년은 비즈니스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 강조, 1998년은 분산된 의사결정과 자기조직화 강조 - industry를 ecosystem으로 용어를 대체하자고 주장 - life-cycle : birth → expansion → leadership → self-renewal or death - Moore의 개념은 cluster 또는 value network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lansiti & Levien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ecosystem의 주요 특징 : fragmentation, interconnectedness, cooperation, competition - 세 가지 성공요인 : productivity, robustness, the ability to create niches and opportunities - 기업의 네 가지 역할 : keystones, niche players, dominators, hub-landlords(lansiti(2005)) - 자연계와 다른 점 *actor가 지능적이며,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갖춘 *비즈니스 생태계는 가능한 구성원 모두가 서로 경쟁함 *자연계는 순수한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비즈니스 생태계는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함
Power & Jerjian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는 integrated electronic business를 구성 - 많은 비즈니스가 WWW에 매우 의존하는 것에 주목함 - 기술적인 연결성을 중시하나 가상기업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음 - 주요 이해 관계자 : shareholders, employees, businesses, customers - 비즈니스 생태계는 매우 연결성이 높은 단일 기업에 의해 형성됨을 주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ssain and Kandiah(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창조 중요성 인식 -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은 파트너 및 공급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유형만 business ecosystem에 포함 - integrated value chain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함 • Lewin and Regine(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계 개념의 적용 필요성 시사

4 기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 1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1
- 판단 근거: 본문에서 인용된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의 저작물에 대해 참고문헌에는 출처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예시:

의심 부분: 평가대상 보고서 p. 8, 1줄~ p. 10 <표 2-1> 서식지 정의

| 제 2장. 서식환경평가 현황 |

1. 서식지 정의

서식지 개념은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생명체와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존문헌에서 제시되는 서식지 개념은 종종 다른 개념(때치, 비오톱 등)과 혼용되고 있다. 50여개 문헌(Grinnell, 1917; Leopold, 1933; Hutchinson, 1957; Daubenmire, 1968; Odum, 1971; Block and Brennan, 1993; Morrison et al., 2006)을 통해 서식지 개념을 정리한 Hall et al.(1997)연구에서는 서식지 개념이 다른 용어와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는 점을 사례별로 제시하였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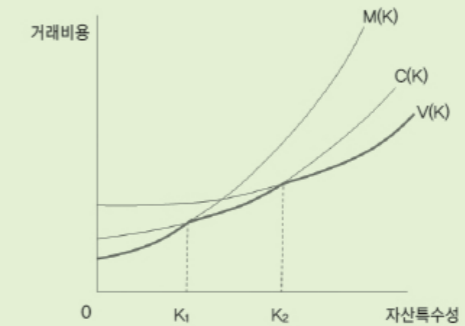
가. 일반적 정의

Hutchinson(1957)은 서식지(habitat)를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와 비교하여 설명하였고(서식지는 '직장 주소', 생태적 지위는 '직업'), Odum(1971)은 서식지를 생물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언급하였다. 한편 Mitchell(2005)은 Odum의 서식지 정의는...

사례 2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1
- 판단 근거: 연구자는 각주 또는 참고 인용의 형태로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 가능한 한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저작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재인용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특히 각주 21과 같이 원 저작물과 그 출처 등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곳이 다수 존재함.
- 예시:

그림 2-4. 자산 특수성, 거래비용 및 수직계열화 유형 간의 관계



주: $M(k)$ 는 순수시장 거래와 관련된 거래비용, $C(k)$ 는 계약과 관련된 거래비용, $V(k)$ 는 수직통합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나타냄.
자료: 윤병삼(2009)에서 재인용.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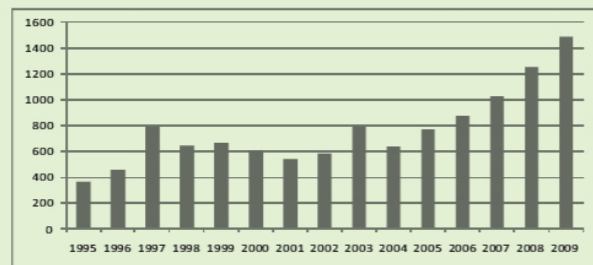
-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유형1
- 판단 근거: 명확한 데이터나 출처표시의 미흡
- 예사:

- 보고서 29쪽 :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는 한-칠레, 한-EU 등을 비롯한 6건이며”
⇒ 보고서 발간 시점이 2011년 2월인데 반해 한-EU FTA가 발효된 것은 2011년 7월의 일임.
- 보고서 32-33쪽 : <표 2-1-1> 기술무역장벽의 유형과 내용은 ○○○ 외(20××) 자료에서 인용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원자료와 다르게 나타나 있음.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임의표준’ 및 ‘상품표시부착’이 예측된 것처럼 표로 처리되어 있으며, ‘상품표시부착’은 ‘상표표시부착’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 보고서 35쪽 “다. 주요국의 FTA 이후 관세율 변화”에 기술되어 있는 수치와 36쪽의 (그림 11-2)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에 출처가 WTO로만 되어있고 자세한 source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좀 더 정확한 출처 제시가 필요함.
- 보고서 43쪽 : <표 3-1-1>과 <그림 3-1-1>의 내용 중 1997년 부분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변조로 오인될 염려가 있음.

<표 3-1-1> 연도별 TBT 통보문 건수(1995년-2009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계	365 (-)	460 (26%)	978 (112.6%)	648 (-33.7%)	669 (3.2%)	611 (-8.7%)	538 (-11.9%)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81 (8%)	794 (36.7%)	638 (-19.6%)	771 (20.9%)	875 (13.5%)	1,030 (17.7%)	1,251 (21.5%)	1,490 (19.1%)

[그림 3-1-1] 연도별 TBT 통보문 건수(1995년-2009년)



자료출처: WTO, 각 연도별,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 사례 1-3의 해석 및 시사점 :

- ① 연구 결과 보고서의 본문에서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각주 등에 출처를 표시했지만, 참고문헌에는 빠뜨린 경우
 - 이 경우는 실수나 착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또 참고문헌에 빠뜨렸다고 해도 각주 등에서 출처를 밝힌 내용을 통해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주었다면 표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렇지만 2차 문헌 표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한 어떤 저작물이든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또한 본문에서 언급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반드시 밝혀야 함. 만약 본문에서 활용한 어떤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도성 및 비의도성에 상관없이 표절임(출처표시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락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음. 고의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표절 의혹을 받을 경우 실수나 착오였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한 어떤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을 제시해야 함.
- ② 참고문헌에는 활용한 해당 저작물을 제시했지만, 본문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일단 의도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실수 또는 착오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라면 독자가 본문에서 활용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참고문헌에 제시한 정보로는 쉽게 찾지 못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함
- ③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본 보고서에서 적지 않게 반복되는 경우
 - 이를 단순 실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왜냐하면 연구자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임.
 - 본문에는 충분한 서지사항이 없는 간단한 출처표시를 했고, 참고문헌에는 완전한 출처표시가 누락된 경우, 독자는 저자가 원저작물을 직접 보고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인용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1차 문헌을 불충분하게 출처표시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없음. 2차 인용한 문헌에 서지사항이 불충분한 경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음.
- ④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함. 그런데 “불특정 회사(A사)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과 같은 인용방식은 부적절함으로 주의를 요함. 또한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방문한 사이트의 URL을 표시한 후 최종 방문일을 기입해야 함.

IV Q&A

- 정부출연(연) 연구자에게 왜 연구윤리가 요청되는가?
-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
- 의도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쓴 경우도 표절인가?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항상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 중복게재, 이중게재, 자기표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 중복게재에서 중복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 표절 금지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효가 얼마인가?

IV Q&A

정부출연(연) 연구자에게 왜 연구윤리가 요청되는가?

오늘날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구자들에게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연구에 대한 공공 자원이 증가, 연구 규모의 대형화 및 분업화 등으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익한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 간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연구자의 스트레스 심화, 연구자의 업적을 지나치게 양적 실적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시스템, 급 성장한 연구 역량에 부합하지 못하는 연구윤리의 불감증 등은 연구자로 하여금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높은 연구윤리 의식과 실천이 요청된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연구의 진실성이 확보된다. 진실성이 결여된 연구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연구자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연구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학문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과 장래까지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2007. 4)

특히 정부의 고급 두뇌로서 국가의 정책 현안이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 연구자가 모든 연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연구자 자신과 그가 속한 연구기관은 물론 국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연구윤리의 준수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연구자가 연구윤리 의식이 결핍될 때의 문제점

- 진실성과 과학적 가치가 높지 않은 연구로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진 연구비를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주어진 연구 환경 하에서 최대의 연구역량이 발휘되는 것을 저해
- 국내 과학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 저하
- 국내 과학 커뮤니티에 솔직하고 투명한 연구교류를 통한 국내 과학 수준의 발전 저해
- 사회로부터의 신뢰와 지지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과학적 사고에 악영향
- 후속 세대에게 올바른 연구풍토와 과학자로서의 의무감을 심어주지 못함

(출처: 김진원의 『서울시립대학교 이공계 및 사회과학 대학원 연구윤리 강의교재 연구윤리』 2007, p. 31.)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

영화 및 음악 분야 등 예술 창작 활동에서의 표절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주로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저작권 침해의 사안이 많은 데 비해, 학술연구 분야에서의 표절은 일차적으로 저작권침해의 부분을 포함하면서도 대체로 어문저작물과 관련되므로, 친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연구윤리적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를테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중복게재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표절의 개념이 적용된다.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침해란?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하고 그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저작권침해에서는 표절 판단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을 적용하는데,
 - 1)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의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
 - 2) 차용된 양이 일정 정도는 되어야 하겠지만 양적으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이 함축되어 있는 중요 부분이 차용된 경우라면 표절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 저작권침해 행위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출처: 문화관광부, 『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2007년, pp. 8-11 참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물은 첫째, 인간이 만든 정신활동으로서 둘째, 다른 것을 모방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셋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이 언어, 색채 등에 의해 밖으로 표출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베낄 때 표절이 되어 비난 및 제재를 받지만,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관련된다면, 학술연구 분야에서의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윤리적인 문제가 결합된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의도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쓴 경우도 표절인가?**

표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에서 암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연구 결과가 전적으로 연구자 혼자만의 아이디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되는 선행 연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더 발전되고 창의적인 저작물을 내는 것이 연구 활동의 기본이지만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연구자의 도리 또는 책임은 자신의 저작물을 산출함에 있어 의존했던(인용한) 모든 저작물의 원저작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표시로써 정확하게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다.

☞ **표절은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하는가?**

- 표절의 전형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복사 또는 빌려오는 것도 표절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일종의 “우연적인 표절(accidental plagiarism)”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신의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글을 자신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이다.

- 따라서 연구자는 비의도적인 표절 또는 우연적인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연구를 할 때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문제는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일 때 표절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표절은 처음부터 타인의 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

신의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든,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된 경우든 모두 해당된다. 표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활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아 발생하므로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누구의 어디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독자에게 그 출처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표절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항상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등을 가져다 쓸 때 출처를 명시했다면 인용한 양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 이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정한 이용(fair use)과 관련되는 것으로, 만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절이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은 아무리 출처를 밝히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저작물에서 종이 되고 나의 것이 주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인용된 부분은 출처를 밝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그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인용 부호없이 타인이 쓴 독특한 표현이나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쓰는 것은 표절이다.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common knowledge)은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일반적 지식이란 간단히 말해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또는 ‘만유인력은 뉴턴이 발견했다’ 등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아무리 일반적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새로운 창작 또는 사용자의 것으로 오인케 한다면 윤리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는 창작자의 양심과 제3자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 중복게재, 이중게재, 자기표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쓸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가져다 후속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자신이 쓴 저작물이지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보통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 또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이라고 말한다.

국내·외에서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합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국내의 학자들 중에는 자기의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자기 저작물 활용 및 보완 행위 자체를 문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자기의 저작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훗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자기복제'라는 표현을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표절하면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훗친 것인데, 자신의 것을 자기가 훗쳤으므로 자신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 학계에서도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자체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을 들어 "재활용 사기(recycling fraud)", "텍스트 재활용(text recycling)", "텍스트 재사용(text reus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신의 저작물이 일단 학술지에 발표되었으면, 공적 영역에 속하게 되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인용을 할 때는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고 써야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공적으로 공표된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아무런 출처표시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자기표절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술 저작물이 학술지에 출판되었을 때 대체로 저작권이 출판사에 이양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무리 자기가 쓴 것이지만, 출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논문이나 보고서의 내용을 새로운 투고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 이전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인용해야만 하며, 간략하게 왜 이 새로운 투고가 이전에 출판된 논문 또는 보고서와 달리 실질적으로 새로운 투고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자기표절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대학이나 학회 등에서는 사용 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표절, 중복게재, 이중게재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복게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중복게재,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자기표절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혼용하거나 구분하여 쓰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일부든 상당부분이든 전부든 출처표시 없

이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럼에도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미 한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두 번째로 게재하는 것이 이중게재라면, 이전 저작물의 일부분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것은 중복게재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평가에서는 중복게재라는 용어를 이중게재와 자기표절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 중복게재에서 중복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identical)"것을 이후의 저작물에 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교되는 두 연구 결과물이 말 그대로 (거의) 똑같다는 것(이를테면, 보고서나 논문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이 같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의 일부가 조금 바뀌었을 뿐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 경우)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이후의 연구 결과물의 연구 방법론, 연구 구조, 내용, 논의(토론), 결론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용의 일부를 바꾸었거나 새롭게 첨가했다고 해도 핵심적 논지가 변화되지 않고 결론도 다르지 않아 비교되는 두 저작물의 질적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의 저작물(연구 보고서 또는 논문)을 의미있게 해 주는 몇 가지 주요 부분들(가설, 표본 수, 연구 방법이나 구조, 결과, 논의 또는 고찰, 결론 등)이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고자 할 때, 출처를 표시하거나 또는 처음 게재한 학술지¹⁹⁾ 편집자나 연구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연구 보고서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때 학회나 학술지를 발간하는 출판사에 저작권 양도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므로 자신의 저작물(논문)이라도 저작권은 학회나 출판사가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미 학술지나 기타 저작물(단행본이나 학술지가 아닌 저널 등)에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을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학술지에 이미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중복게재의 문제는 동료 평가 시스템을 갖춘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

19) 보통 학술지란 사전적으로는 학술 예술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글을 실는 잡지를 말하는 데, 동료 심사를 거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간행물을 학술지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로서,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을 위해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비학술단체의 저널(발간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의 경우에도 뒤에 발표된 저작물에서 이전에 발표된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 편집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중복게재가 아니다.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 보고서, 학위 논문 등을 학술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재활용하는 경우, 학문 분야에 따라 중복게재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달라 단일의 잣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학술단체의 저널에 실린 자신의 저작물을 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때에도 출처표시 여부가 학문 분야에 따라 중복게재인가 아닌가의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복게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데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여 마치 이 새로운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는 것처럼 독자나 출판사를 속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도 이로 인하여 쉽게 연구 업적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를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 **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표시 방법은 무엇인가?**²⁰⁾

일반적으로 인용은 인용 부호를 적절히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학술 연구에서 인용과 표절은 상반된 개념으로, 인용은 학문 발전을 위해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이어주는 긍정적인 가교의 역할을 한다. 자신의 연구 보고서나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목적은 첫째,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둘째, 공통되거나 상반되는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셋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 권위 있는 의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전자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다른 연구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이다.

올바른 인용은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글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윤리이고 예의이다. 인용은 연구자가 원저자에게 그의 글과 아이디어에 대해 인정(credit)을 한다는 표시이며, 표절의 문제

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다. 또한 인용은 원래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저자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을 쉽게 해주며, 인용을 통해 독자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을 할 때 적절하게 해야 한다.

인용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둘째,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절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표절은 일차적으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발생하므로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또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인용을 제대로 해야 표절을 예방할 수 있다. 한마디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되 그것이 공정한 이용(fair use)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정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둘째,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셋째,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인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올바른 인용 방식이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될 수는 없을 것이고 국가마다 학문 분야별로 서로 다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용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내가 창안해 낸 단어나 어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활용할 때는 어디에서 참고했거나 따온 것인지를 정당한 방식으로 밝혀, 원저자에게 진 빚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고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이것에 대한 통상적인 합의가 바로 인용이다. 이처럼 인용은 글을 쓸 때 원저자에게 진 빚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감사)하는(acknowledge indebtedness) 정당한 방법인 것이다.

연구자는 올바른 인용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용의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 ①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verbatim, copying), 일부 단어를 말바꿔쓰기(paraphrasing)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summarizing),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credit) 한다.
- ②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 부호(“”)로 표시해야 한다.
- ③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색깔이 담긴 언어로 표현되도록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④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의견, 비판점이나 역사적 사실은 직접 인용하든 말바꿔쓰기를 하든 출처를 밝혀야 한다.

20) 이 부분은 이인재, "연구결과 발표에서의 연구윤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 116-119를 재구성함.

- ⑤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⑥ 웹 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 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⑦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매년 심장병으로 몇 사람이 사망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그 해답을 말할 때 누군가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게 되므로 그 출처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말바꿔쓰기를 위한 제언〉

◎ 말바꿔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 주의 깊게 꼼꼼히 읽는다.
- 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 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
- 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
- 필자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 말바꿔쓰기의 기본 원칙

- 원전과 비슷한 어휘 수를 유지한다.
- 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
- 원전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원저자는)~주장한다. 설명한다’등으로 나타낸다.

〈사례를 통한 올바른 인용 방법 예시〉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최인훈, 『광장』(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p. 196.

표절	표절인 이유
①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출처표시 없음)	① 인용부호와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최인훈이 쓴 문장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표절 ② 자료의 출처는 제시했지만 그대로 가져온 문장을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인용문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표절 올바른 인용: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②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① 인용부호와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최인훈이 쓴 문장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표절 ② 자료의 출처는 제시했지만 그대로 가져온 문장을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인용문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표절 올바른 인용: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③ 싸움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출처표시 없음)	③ 최인훈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매우 비슷한데, 출처표시가 없으므로 표절임. 원저작자의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으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말을 바꿔 표현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올바른 인용: 전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이명준은 중대한 고민에 맞닥뜨렸다.*
④ 이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처표시 없음)	④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은 인용부호 안에 넣어 인용문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올바른 인용: 최인훈에 따르면, 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심각한 내적 갈등에 휩싸인 듯 보였다.*
⑤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출처표시 없음)	⑤ 원저작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부분은 인용으로 표시하고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명준이 깊은 구렁에 빠졌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원저작자의 판단이다. 올바른 인용: 최인훈은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고 썼다.* 최인훈에 따르면, 휴전 소식을 접한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떨어진 듯 보였다.*

■ 표절 금지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효가 얼마인가?

현재 표절 금지 등 연구윤리 위반을 한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자 할 때 어느 시점까지를 소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먼저 시효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은 시효를 두어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당시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의 효과가 없게 되고, 또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 연구자들은 연구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을 자발적으로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효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은 과거에는 모르거나 관행이었기에 행한 것을 현재의 높아진 기준에 의해 무한정 소급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오거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2007년 2월에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1년 6월 2일 개정안에서는 시효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효 문제의 규정 여부라기보다는 얼마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연구수행의 기준에 맞춰 책임있고 정직하게 연구를 수행하는가에 있다. 특히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실천해 가도록 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연구진실성 검증 위원회가 가동될 때 판단 기준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고 해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을 받은 자가 그 연구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와 유사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의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당시의 그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학계나 연구기관의 합리적 관행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년도(2011년 실적)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기준

1. 위 조
2. 변 조
3. 표절/중복게재
 - 1) 표 절
 - 2) 중복게재
3. 표절/중복게재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5. 기 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년도(2011년 실적)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기준

1 위 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 조²¹⁾

- 연구 재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중복게재

1) 표 절

- 표절은 “전형적 표절”과 “비전형적 표절”이 있음. 전형적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²²⁾ 자기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비전형적 표절은 “전형적 표절”이 아닌 경우를 말함.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보고서 중 위조와 변조의 사례를 찾아 검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금번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으로 삼아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함.

22) “출처표시를 누락한 경우”와 아래의 “부적절한 출처표시의 경우”를 포함한다.

- 비전형적 표절의 세부 유형은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 임.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으면 표절로 봄.²³⁾

- 양적 주종관계:** 인용물에서 차지하는 피인용물 전체 합 의 비율로 산정하되 구체적으로 저술의 종류, 형태, 분야에 따라 주종관계 형성 비율은 다를 수 있음.
- 질적 주종관계:** 피인용물 전체가 내용적으로 주가 되고 인용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에 불과한 경우로서 해당 학문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없는 경우를 말함.

■ 출처표시의 방법

- 원칙적으로 출처표시는 문장 단위로 함.
- 출처표시·인용의 방법은 학문분야 별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다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연구보고서의 종류 별로 출처표시의 방식을 달리 할 수 있음.
- 출처표시 의무는 간접인용(“바꿔 쓰기”)이라고 하여 면제되지 않음.
-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으로 기재해서는 안 됨.²⁴⁾

■ 부적절한 출처표시

-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
- 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
- 재인용 사실을 숨기는 행위(자신은 1차문헌을 활용했다고 그 출처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2차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도 2차문헌의 인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특정 제목 하의 내용 전부를 인용할 의도로 제목에 출처표시를 하는 행위
- 출처표시 용례의 부정사용²⁵⁾

23) “양 또는 질”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양적 주종관계와 질적 주종관계 중 하나만 형성되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된다.

24)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으로서 단지 관련 자료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참고문헌”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료 목록”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25) 출처표시의 용법에 따르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 예컨대 참조한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가져왔으면서도 “참조”로 표시한다거나 그 반대인 경우 등을 말한다.

주요 연구윤리 위반 유형

■ 표절 의심이 있는 경우

- ①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 표기
 -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 즉 논리 전개)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²⁶⁾
 - 일반적인 지식(common knowledge)²⁷⁾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개념, 어휘, 문구, 문장, 단락), 표, 그림, 사진, 데이터 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경우
 - 타인이 쓴 글을 저자가 '말 바꿔 쓰기(paraphrasing)'나 요약(summarizing)을 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교과서나 교재 등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면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 ②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번역 후 출처 미 표기
 - 타인이 쓴 외국어 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그대로 또는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하면서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③ 2차 문헌 표절
 -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 바꿔 쓰거나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재인용 표시(2차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를 해야 함에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의 출처표시를 한 경우
- ④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혔지만, 3문장 이내로 직접 인용하였으면서도, 인용부호(" ")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통상 출처표시는 직접 인용의 경우 문장 단위로 하며, 3문장 이내로 할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로 표시하고, 3문장이 넘어설 때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indentation) 표시를 해주어야 함(저자 자신의 글과 인용된 원저자의 글을 구분하기 위해 한 줄을 띄우고 좌우를 들여 쓰거나 글자체나 크기를 달리함)
- ⑤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 활용한 타인의 동일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이나 타인의 여러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⑥ 인용한 것에 대해 불분명한 출처표시
 - 본문에는 출처를 표시했지만 참고문헌에는 누락한 경우
 - 직접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는 했지만 정확한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참조라고 표시하는 경우

26)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서술의 체계와 패러다임이 닮은 경우

27)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은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일반적 지식이란 쉽게 말하면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해당 전공)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교과서에 실리는 수준)을 말한다. 일반적 지식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즉 저자와 독자가 누구이고, 저자와 독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2) 중복게재

-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 또는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게재 또는 출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자기표절, 이중게재를 포함하는 것임.
- 연구의 심화 및 적용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연구물의 일부를 가져다 쓸 때에도 선행 연구물의 존재를 출처표시 등을 통해 밝혀야 함
- 다음에 예시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²⁸⁾ 다만 이용된 선행 저술의 존재와 출처를 밝혀야 함.
 - (1)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을 저서, 논문, 보고서의 형태로 출간하는 행위
 - (2) 용역보고서, 정책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에 따라 작성된 저술을 별도의 저서 또는 논문 형태로 출간하는 행위
 - (3) 이미 출간된 자신의 보고서, 논문 등 여러 편을 편집하여 단행본 기타 저술 형태로 출간하는 행위
 - (4) 이미 출간된 자신의 보고서, 논문을 편집자의 특정 목적에 따라 다른 저자의 논문 등과 함께 편집·출간되는 경우²⁹⁾
 - (5) 워킹 페이퍼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자료를 정식출판물로 발간하는 경우
 - (6) 기존의 연구기관 내 자신의 연구물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교양 시사 잡지, 기타 대중매체에 기고하는 경우
 - (7) 기존의 연구기관 내 자신의 연구물을 독자층이 다른 외부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다른 언어로 번역 출간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성격, 사용된 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8) 이 규정은 예외규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자기표절·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유형을 적극적으로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기표절·중복게재에의 해당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유형 중에서 자기표절·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명료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시 규정"형식을 따름으로써 열거된 유형 외의 유형을 배제하지 않았고, 나아가 임의규정 형식을 따른 것은 판단에 있어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학위논문을 예로 들면, 나라별로 학위논문의 개념정립이 다르고 그에 따라 출판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저서 또는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자기표절·중복게재의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학위논문을 "논문 쪼개기"(이른바 "살라미 논문")를 통해 필요 이상의 편수로 발표하는 것은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도 있는 등, 자기표절·중복게재의 판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규정의 명확성을 다소 해하더라도 임의규정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9) 바로 앞의 (3)은 자신이 편집자가 되어 자신의 논문만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단행본이 출간되는 경우이고, (4)는 여러 사람의 논문을 모아 편집·출간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연구윤리 위반 유형

■ 중복게재의 의심이 있는 경우

- ①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이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오해케 하는 경우
- ② 출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시하지 않는 경우
- ③ 출처 표시를 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 비판적 해석 등)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활용이 아니라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기여 없는 저자를 공동저자 또는 명예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 자신의 저술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유명한 타인을 저자로 표시하거나 공동저자로 표시하는 행위³⁰⁾
-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를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특히,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본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저자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함.)

주요 연구윤리 위반 유형

■ 부당한 저자표시

-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30) 타인의 저술을 자기 것인 양 하는 것이 표절인데 반해, 이 경우는 자신의 저술을 타인의 것인 양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표절(reverse plagiarism)이라고 한다.

- ② 본 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본 보고서의 일부 장, 절을 타인의 협조를 얻어 작성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함

-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및 감독을 해야 하며,
-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본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저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함(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000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야 함).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만약 본 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먼저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음

5 기 타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본문에 출처표시를 했지만 직접 인용되어 있음에도 정확한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고, 저자명과 저작물의 출판 연도만 표기하는 경우
- 본문의 출처표시와 참고문헌 목록의 불일치(본문에서 언급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 중요한 피인용 논문의 참고 문헌 미기재는 편집상의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독자들이 해당 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오인을 받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주요 연구윤리 위반 유형

■ 기타

- ①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각주 등을 통해 출처를 표시하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을 참고했는지 그 저작물의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 출처표시의 대전제는 원저자의 업적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그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 접근이 쉽도록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저자의 것이고 원저자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에 활용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용한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학문 분야마다 출처표시의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특정 부분을 직접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표시(“ ”)를 한 후 해당 페이지를 표시해야 함. 특정 부분을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한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 주어야 함

② 연구보고서의 본문에서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각주 등에 출처를 표시했지만, 참고문헌에는 빠뜨린 경우

- 이 경우는 실수나 착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또 참고문헌에 빠뜨렸다고 해도 각주 등에서 출처를 밝힌 내용을 통해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주었다면 표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렇지만 2차 문헌 표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한 어떤 저작물이든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또한 본문에서 언급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반드시 밝혀야 함. 만약 본문에서 활용한 어떤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도성 및 비의도성에 상관없이 표절(출처표시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락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음. 고의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표절 의혹을 받을 경우 실수나 착오였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한 어떤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을 제시해야 함

③ 참고문헌에는 활용한 해당 저작물을 제시했지만, 본문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일단 의도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실수 또는 착오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라면 독자가 본문에서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참고문헌에 제시한 정보로는 쉽게 찾지 못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함

④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본 보고서에서 적지 않게 반복되는 경우

- 이를 단순 실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왜냐하면 연구자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임

- 본문에는 충분한 서지사항이 없는 간단한 출처표시를 했고, 참고문헌에는 완전한 출처표시가 누락된 경우, 독자는 저자가 원저작물을 직접 보고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인용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1차 문헌을 불충분하게 출처표시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없음. 2차 인용한 문헌에 서지사항이 불충분한 경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음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소개』,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07년 2월 (2011년 6월 2일 일부 개정).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7년.
- 김명진, “한국의 과학윤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과학사상』, 제43호, 2002.
- 남형두, 『국책연구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윤리제도 정책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2011.
- 손화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한국연구재단, 2011).
- 송석수, 김석관,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 Brief』, 제9호, 2006. 1.
- 송진웅역, 『과학교육에서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서울:명경, 1994).
- 이인재,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윤리,” 한국윤리학회편, 『과학기술과 윤리』 (서울:형설출판사, 2008).
- 이인재, “연구윤리 정립방안: 표절이란 무엇인가?” 한국윤리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회의, 『과학기술사회에서 연구윤리의 과제』, 2007년 8월.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한국연구재단, 2011.
- 한국원자력연구소편,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 (서울:두양사, 2006).
- Frazer, M. J. and A. Kornhauser, eds., Social Responsibility in Science Education (New York: Pergamon, 1986).
- Shamo, A. E. and D. B. Resnik,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연구윤리 사례집

연구윤리 사례집 발간 TF 위원

팀장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필위원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학과 교수)
검토위원	김동주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 창작학과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성도 (국무총리실 연구지원팀장) 김이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장)

발행일	2012년 7월 9일
개정	2012년 8월 9일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집·인쇄 경성문화사 (02_786_299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본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있습니다. 아울러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사례집」이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1호
전화 02-571-0002 / 팩스 02-572-4092